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시 수수료 폐지〉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69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2.
3. 회부연월일 : 2025.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령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이나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

이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9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던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u>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u>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 ⑪ (생략)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 <u>교부를 받으려는 자는</u> ----- ----- ----- ----- ----- ----- ----- ----- ② ~ ⑪ (현행과 같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④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현행법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수수료는 1건 1회에 300원이고,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이며,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나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 타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¹⁾의 수수료는 500원임.

다만, 전자문서로 열람·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그 등·초본 교부 시의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재 수수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1)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데, 수수료를 일괄하여 면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최근 3년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건수는 약 1억 8백만통(유료 43.5%, 무료 56.5%)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약 181억원임.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고령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항을 규정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한 디지털 소외계층 편의 증진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수수료 면제 관련 조례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하 “발급”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65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이하 “발급”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70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하 “발급”이라 한다) 수수료를 면제한다.

1. 70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2. 100세 이상 주민과 동일 세대원이 해당세대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현장 발급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업무 부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충청북도 제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보전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불필요한 등·초본 발급 신청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인천광역시 중구·미추홀구·부평구는 타 증명 서류의 수수료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금융·대부업체 등이 제3자에 대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제규정이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